

충남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2.22.]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경제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제출자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② 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제4조(응시절차) 학위논문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과목) ①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자격시험의 교과목은 학과에서 정하고,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6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① 출제위원은 학과의 전임교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출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합격기준) ①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8조(논문지도위원회)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 제40조의 1항을 따른다.

1.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3.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제9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2.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
4.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받은 자
5. 박사학위과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학술지게제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제10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485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93점 이상
 4. TOEFL(iBT) 69점 이상
 5. 국제언어교육센터의 모의TOEIC 600점 이상
 6.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연구윤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필히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학술지게제 의무조건) 박사과정은 [별표 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학과명	학술지논문게재 의무조건			
	학술지 종류	논문 게재 편수	인정저자	비고
농업경제학과	국내전문학술지 (등재후보) 이상	1편 이상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